

손로몬 X 판례

3인의 생환기

04. 로몬, 판례로 세상을 바꾸다!



법이 약자를
이리 내모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게 이 나라
조선의 정의인가?

쌩 아 아...



2026년

내가 살던 조선과
대한민국의 재판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로몬이
특별한 건가...



조금 전

저요.
걱정 많이 했는데,
벌써 판례로 3명을
구제했어요.

운이 좋았다.
허나, 너 혼자 애쓴다고
억울한 사람들 모두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장하라!

보장하라!



법으로 약자를
보호한 의미있는
판결도 많아요.

그에 비하면
전 늘 부족하다는
생각 뿐이었어요. 그래서
멈추는 법을 잊었죠.

좋다.
판결로 저들까지
구제할 수 있다면,
인정하지.



당신들 대체 뭐야!
왜 또 시위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장하라!

보장하라!

우린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현재

세 분 모두
같은 문제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말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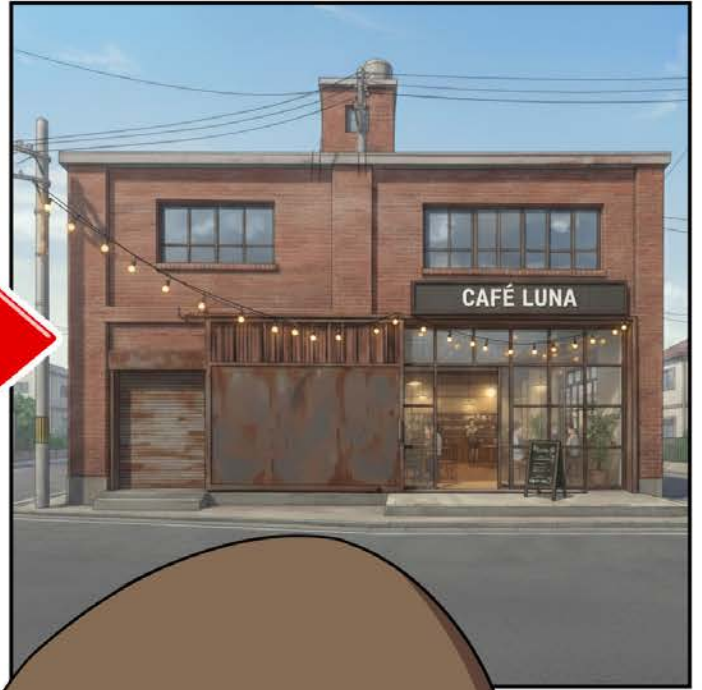




행복동 카페거리가
조성되며 찾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단차가 있는 매장에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장애인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카페를 꼭 짝어
시위하나요?



우리 카페는 내부와
외부가 옛 공장의
특징을 최대한
살린 컨셉입니다.

컨셉 포기하라면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차라리
지금처럼 이행강제금을
꾸준히 내겠습니다.



저는 상가번영회
회장인데

행복동 카페거리의 인기가
오르니까 타겟이 된 거죠.
장애인 인권 시위용 언론
플레이에 동원된 거잖아요.

뭐라!

언론
플레이
라니요?



이미
비슷한 질문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2022다289051.
여기서 함께 답을
찾아볼까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은
1998년 시행되었지만, 작은
소매점등은 적용대상이 아니었어요.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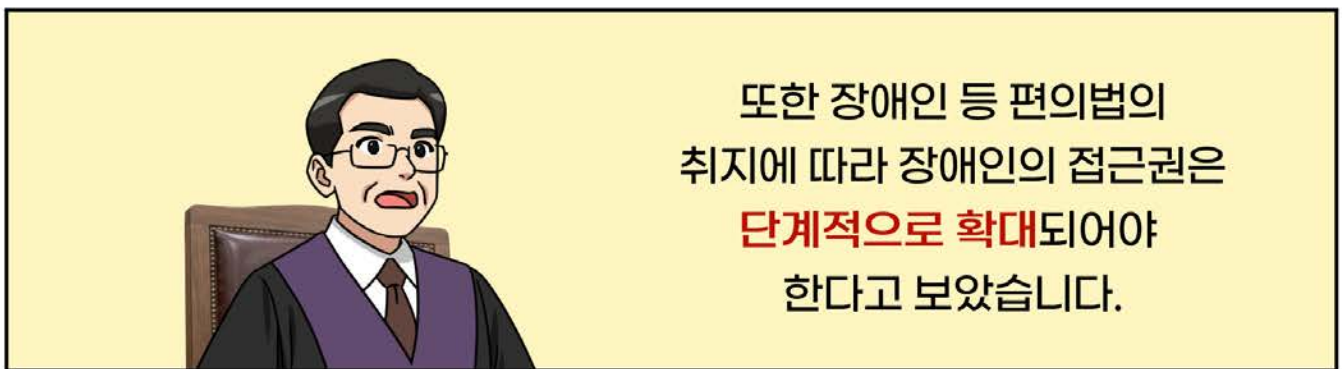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 접근권 보장”

바로 시행령에서 **300㎡ 미만**
소매점을 설치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을 24년간 바꾸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전국 약 95%**의
소매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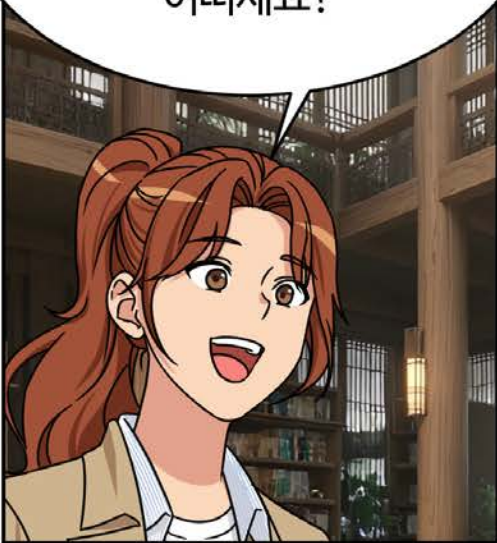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입국입니다. 장애인
인권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어요.

2022년 면적 50㎡ 이상
소매점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행령도
개정되었어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이행강제금을 떠나
가장 트렌디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느낌 오네요!
모두 즐길 수 있는
트렌디한 카페



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이참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행복동 카페거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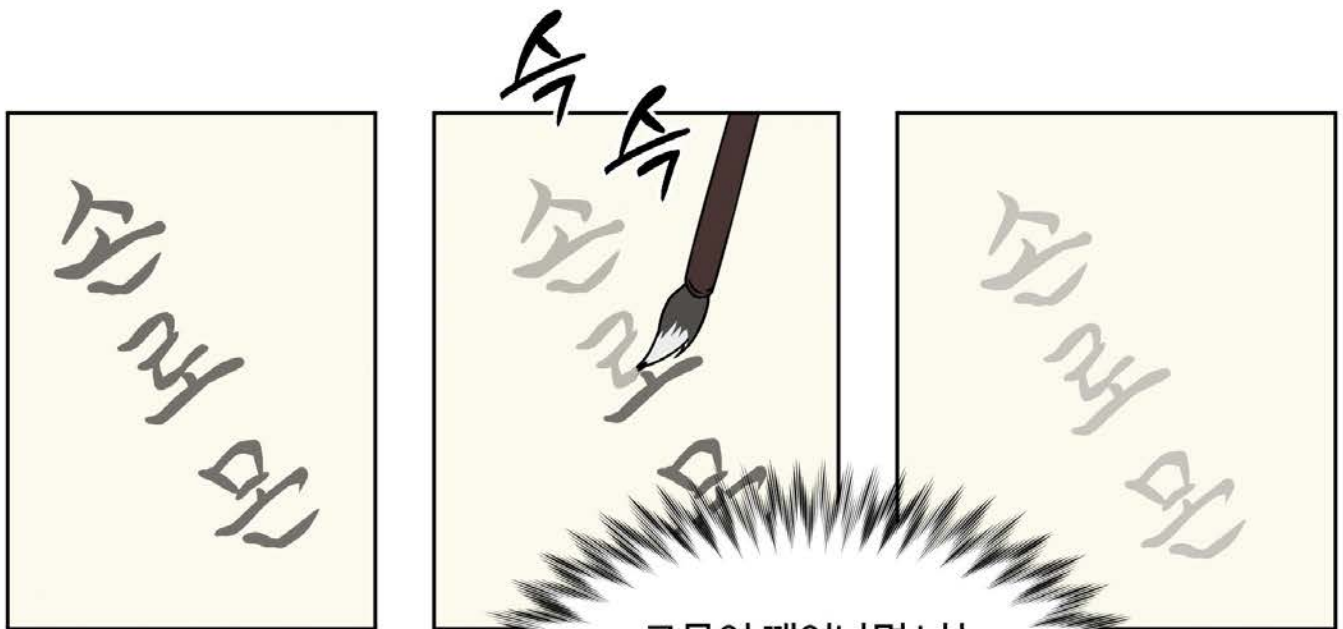


모두,
감사합니다.









로몬이 깨어나면 나는
그에 대한 엄정한
대가를 치를 테지.



허나, 로몬같은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 제 할 일을
다 한다면...



그야말로 모두에게
이득일 테니, 내가
치를 대가는 그에
비하면 사소한 것.

-To be continued



사기등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등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요약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를 실행하였으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공모사실이나 범행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공모사실이나 범행 고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그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는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의 내용과 그 연락수단,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하였는지, 그 과정에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현금수거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교부한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생성, 작성 경위, 그 내용 및 작성명의자 등과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업무의 관련성, 피고인의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 교부, 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특히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